의안번호	제207호		
의결연월일	2023. 12. 1.		

-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17. 예산군수

○ 회 부 일 자: 2023. 11. 21. 행정복지위원회

○ 상 정 일 자: 2023. 12. 1.

제296회 예산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총무과장: 박상목)

가. 제안이유

○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일부 개정 관련 부단체장의직급 상향[4급(서기관) → 3급(부이사관)] 반영

나. 주요내용

○ 기관별·직급별 정원 변경(제31조 관련 별표 5)

- 본청 : 4급(3명 → 2명), 3급(0명 → 1명)

기관별 직급별	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
4급	4	3		1		
4급 ~ 5급	1					1



기관별 직급별	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
3급	1	1				
4급	3	2		1		
4급 ~ 5급	1					1

○ 부칙 시행일(2023년 12월 31일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김영순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1조(부시장·부지사 등의수와 직급 등)의 일부 개정 관련 인구 10만미만 시·군·구부단체장 직급 조정 등에 따라, 인구 5만이상 50만 미만의시·군 부단체장의 직급이 상향[4급(서기관)→3급(부이사관)]되는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,
-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.

4. 질의・답변요지

○ 생 략

- 5. 토 론 요 지
 - 없 음
- 6. 심 사 결 과
 - 「원안가결」
- 7. 소수의견 요지
- 없 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
 - 없 음